

정년연장 조기결정 제도 운영세칙

제정 2024. 4. 1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한 정년연장 조기결정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①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연구성과를 이룩한 정년보장 교원이거나, 세계적 석학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정년보장 교원 또는 총장이 대학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정년보장 교원을 대상으로 65세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.
② 재직 중인 전임교원 또는 전임교원으로 신규임용예정 교원을 대상으로 정년연장 임용할 수 있다.

제3조(임용원칙) 정년연장 조기결정 제도는 50세~55세 시점의 정년보장 교원 중 별도의 추천요건을 충족한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56세~59세 시점에도 임용 기회는 부여하되 50세~55세 시점보다 강화된 추천요건을 적용한다.

제4조(임용인원) 본 세칙을 통해 정년연장 임용된 교원은 정년보장 교원 수의 30%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5조(임용절차 및 심사방법) ① 정년연장 조기결정 제도는 학과인사위원회 심의와 주임 교수의 추천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시행한다.
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추천서와 해당 분야의 해외 전문가 5명 이상의 평가서를 참조하여 심사한다.

제6조(임용시기) 임용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되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7조(처우) 본 세칙을 통해 정년연장 임용된 교원에게 만 70세까지 전임교원으로서 동일한 처우를 유지한다.

제8조(준용) 본 세칙을 통해 정년연장 임용된 교원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